

서울특별시의회  
제320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

2023. 9.

서울특별시의회  
김기덕 의원 (더불어민주당, 마포4)

□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에 대하여  
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은 인구정책 수립과 관련하여,

정책의 주체인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,

상호 논의를 통한 주체적인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한

시민참여단 구성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,

□ 재정지원 주체 측면에서 법인, 단체 등으로 인한

기존 광범위한 조항을 기업, 유관단체 등으로 세분화하고,

인구정책 시행 시 공로가 인정되는

주체에 대한 포상 조항 마련으로

정책 수립의 기반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□ 이에 안 제11조를 신설하여

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단에 대해 규정하고,

□ 안 제12조 제1항 중

기존 법인·단체로 규정한 항을

대학·기업·유관단체 등으로 용어를 확대하여

구체적인 세부 재정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,

□ 안 제14조를 신설하여

인구정책 시행 관련 포상에 관한

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 
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
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